

# 「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3월 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6년 3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6년 3월 13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산림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치유의 숲 체험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,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분류 항목 조정 및 단순화를 통해 체험객의 이용편의 향상과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체험료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추가 적용(안 제9조)
  -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와, 평창군 교류협력 도시 거주자에게 감면 사항 추가
- 별표1(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) 내용 변경
  - 항목 조정 및 단순화(체험프로그램 구분에서 시간단위 구분으로

변경)법령 및 정부24 등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도 “법인 등기사항증명서”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비 필요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- 붙임 1. 「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  
2. 「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 「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6. 03. 03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### 2. 제안이유

- 치유의 숲 체험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,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분류 항목 조정 및 단순화를 통해 체험객의 이용편의 향상과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체험료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추가 적용(안 제9조)
  -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와, 평창군 교류협력 도시 거주자에게 감면 사항 추가
- 별표1(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) 내용 변경
  - 항목 조정 및 단순화(체험프로그램 구분에서 시간단위 구분으로 변경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산림기본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치유의 숲 운영제도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써,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9조에서는 당해 연도에 평창군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자와 평창군 교류도시 주민을 체험료 감면 대상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,
- 별표 1의 체험료 및 시설 이용료의 구분을 시간 단위(2시간, 4시간)로 변경하여 단순화하는 등 내용을 개정하였음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산림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보전 및 이용 증진 책무를 바탕으로 치유의 숲 운영제도를

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, 시설 운영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성이 있기에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**산림기본법**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,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,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0.>

#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563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6. 3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치유의 숲 체험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, 체험료 일부 조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9조 2항 체험료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추가 적용  
-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와, 평창군 교류협력 도시 거주자에게 감면 사항 추가
- 나. 조례 제8조 2항 별표1의 체험료를 조정하여 체험료의 단순화  
- 산림치유 및 체험프로그램(온열, 다도·다례, 명상)의 각각 나뉜진 체험료를 시간단위(2시간, 4시간)로 변경하여 단순화 시켜 체험객에게 다양하고 여러가지의 체험을 할 수있게 변경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림기본법」 제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 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 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6. 1. 8. ~ 1. 29.) 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  
- 평창군 공고 제2026-66호, 산림과-1947(2026. 1. 30.)호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 대상[기획예산과-311(2026. 1. 6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예산과-311(2026. 1. 6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없음[가족복지과-880(2026. 1. 7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370(2026. 2. 4.)호]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3436(2026. 2. 25.)호]

##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카목을 파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해 연도에  
평창군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

타. 「평창군 국내·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 
따라 선정된 평창군 교류도시 주민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(제8조 관련)

| 구 분  |      |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|         | 비 고  |
|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 |      | 개인          | 단체      |  |
| 프로그램<br>참가료<br>(2시간)   | 일반   | 10,000원     | 9,000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치유음료는 2시간 프로그램 참가 기준으로 1회제공</li> <li>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,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체험료 적용</li> <li>-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</li> <li>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</li> <li>- 청소년은 8세 이상부터 19세 이하 적용</li> </ul> |
|  | 청소년  | 8,000원      | 7,200원  |  |
| 프로그램<br>참가료<br>(4시간)   | 일반   | 20,000원     | 18,000원 |  |
|  | 청소년  | 16,000원     | 14,400원 |  |
| 시설   | 세미나실 | 25,000원     |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미나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</li> <li>-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</li> </ul>  |
| <p>체험프로그램 : 산림치유, 온열치유, 다도·다례치유, 명상치유<br/>                 2시간 이용자 : 체험프로그램 중 2가지 프로그램 선택 체험<br/>                 4시간 이용자 : 체험프로그램 전부 체험</p>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|

※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

※ 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

※ 기상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음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| 개<br>정<br>안  |
|---|--|
| <p>제9조(체험료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가. ~ 차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카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</p> | <p>제9조(체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차.(현행과 같음)</p> <p>카. 「<u>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당해 연도에 <u>평창군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</u></p> <p>타. 「<u>평창군 국내·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</u>」 제 <u>14조에 따라 선정된 평창군 교류도시 주민</u></p> <p>파. (현행 카목과 같음)</p> |

(현행) [별표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(제8조 관련)

| 구 분       |       |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|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          |       | 개인          | 단체     |   |
| 산림치유 프로그램 | 일반    | 5,000원      | 4,500원 | -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1인 2시간 기준<br>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,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체험료 적용<br>-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<br>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<br>- 청소년은 8세 이상부터 19세 이하 적용 |
|           | 청소년   | 4,000원      | 3,600원 |   |
| 체험        | 온열치유  | 10,000원     | 9,000원 |   |
|           | 다도·다레 | (치유음료 포함)   |        |   |
|           | 치유    | 10,000원     | 9,000원 |   |
|           | 명상치유  | (치유음료 포함)   |        |   |
|           | 치유음료  | 4,000원      | 3,600원 |   |
| 시설        | 세미나실  | 25,000원     |        | - 세미나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<br>-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  |

※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

※ 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

(개정안) [별표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(제8조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|      |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|         | 비 고 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|      | 개인          | 단체      |  |
| 프로그램 참가료 (2시간) | 일반   | 10,000원     | 9,000원  | - 치유음료는 2시간 프로그램 참가 기준으로 1회제공<br>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,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체험료 적용<br>-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<br>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<br>- 청소년은 8세 이상부터 19세 이하 적용 |
|                | 청소년  | 8,000원      | 7,200원  |  |
| 프로그램 참가료 (4시간) | 일반   | 20,000원     | 18,000원 |  |
|                | 청소년  | 16,000원     | 14,400원 |  |
| 시설             | 세미나실 | 25,000원     |         |  |

체험프로그램 : 산림치유, 온열치유, 다도·다레치유, 명상치유

2시간 이용자 : 체험프로그램 중 2가지 프로그램 선택 체험

4시간 이용자 : 체험프로그램 전부 체험 가능

※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

※ 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

※ 기상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음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산림기본법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

산림의 보전,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,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

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/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## 4. 작성자

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주하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450   |